

# 면세 국인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여행객 여러분께

## 1. 면세 구입하는 물품은 구입자 본인이 확실히 국외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.

- 면세 물품은 선물 등으로 국외에 가지고 돌아갈 목적으로 구입하는 분만 구입 가능합니다.
- 사업용 또는 판매용, 기타 전매 목적이나 SNS 등에서 의뢰를 받아 제3자를 위해 면세 물품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.

공항 또는 해항

## 2. 출국 시 세관에 여권 등과 구입 물품을 제시해 주십시오.



여권 등

제시



여권 판독기 등

여행 가방 등에 넣어 '수하물' 처리 할 경우에는 항공사에 맡기기 전에 반드시 세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.

### 세관에서 면세 물품의 소지 여부를 검사

※ 면세 구입한 물품이 다량일 경우 세관 검사에 시간이 걸립니다.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항공기 또는 선박 탑승 수속을 진행해 주십시오.

## 3. 출국 시에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합니다.

- 출국 전에 양도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세가 징수됩니다.
- 면세 구입한 물품을 출국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)이 있습니다.

※ 출국 시 세관에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 수출 확인을 받는 절차(소위 '별송 취급')는 **2025년 3월 31일부로 폐지**되었습니다. (해당 날짜까지 구매한 상품이라면 같은 해 4월 1일 이후에 별송하더라도 원칙적으로 '별송 취급'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)

- 면세 구매 시 면세점에서 면세 판매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  
아울러 면세판매대상자는 '단기 체류', '외교', '공용'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등에 한합니다.
- 면세로 물품을 구입 후 면세이용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(재류자격을 '단기체류'가 아닌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했을 때 등) 면세이용대상자가 아니게 된 때의 주소 또는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비세가 징수됩니다.  
이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여권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.
- 이 안내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